

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[]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[] 정도검사 [] 검정		
신청인	① 상호(사업장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)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(전화번호 :)	
	⑥ 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 :)	
업무, 측정 분야 및 대상 기기	⑦ 간이측정기 성능인증	
	⑧ 정도검사	
	⑨ 검정	
신청 요건	⑩ 기술능력 확보 현황	
	⑪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	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
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
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⑩란과 ⑪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